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생략) | 제24조(특별휴가) ①~⑤ (현행과 같음) |
| ⑥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5. 24.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4月 1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4月 13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5月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조례 제12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

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93. 4.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3. 2. 5 조례 제1731호로 제정된 동 설치조례는 그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실정으로

'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280-214 ('93. 3. 10)로 동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준칙이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사안으로 행정쇄신을 위한 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62 |
|----------|-----|

제출일자 : 1993. 4.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의 폐지('90. 5. 3., 대통령령 제12,999호)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128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5. 24.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5月 4日 區廳長提出
나. 回附日字 : 1993年 5月 11日 回附
다. 上程日字 : 第17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 第2次 委員會(1993年 5月 24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主要内容

-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안 제2조) : 구청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 위탁
- 운영비 보조(안 제5조) : 구청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
- 직원임용(안 제6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
- 지도·감독체계(안 제7조) :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 지도·감독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가. 1993. 5. 4.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당초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을 순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며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85. 2. 6. 시장방침에 의거 서울시의 재정지원하에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주관 운영하여 오던중

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계속 위탁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금번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조례준칙(안)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책의 해를 맞아 독서인구의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의한 계속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자치구 예산(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원의 임용권과 인건비, 지급기준 등의 책정권은 새마을운동區지회가 아닌 서울시지부에서 관장함은 區자치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